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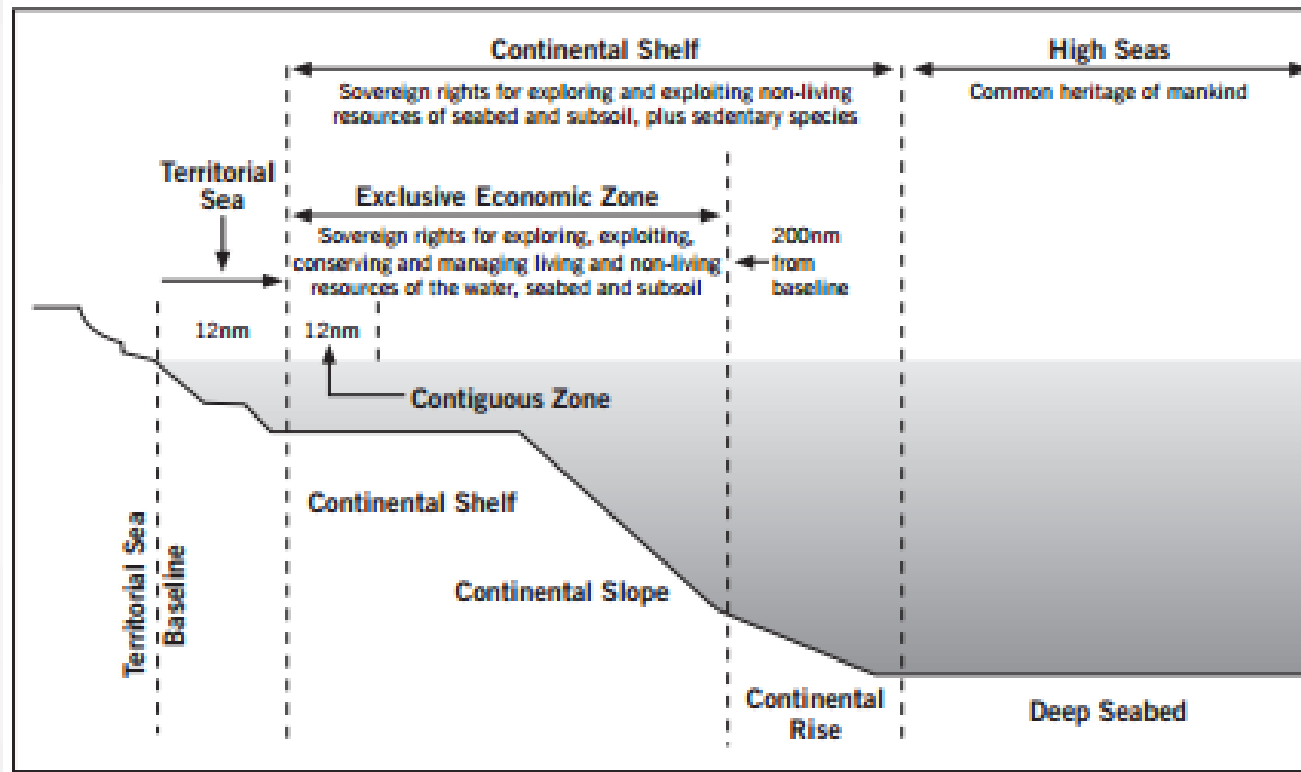
- 제4차 RINSA 세미나 (2023년 4월 26일) -

한중 간 주요 해양법 이슈와 전망 :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해양경계획정

이 기 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양영역 개관



[Extract from <https://www.environmentguide.org.nz/issues/marine/marine-management/areas>]



한중 해양경계획정

한중 간 및 한일 간 어업수역도

[Extract from <http://www.nfrdi.re.kr>]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규칙

영해의 경계획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 국제관습법
-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EEZ의 경계획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 국제관습법
- 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대륙붕의 경계획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1항 / 국제관습법
- Achievement of an Equitable Solution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칙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Article 74(1)
[83(1)] of the
UNCLOS

“The delimitation of the EEZ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이 조항들의
함의

-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정 ‘방법’(method)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 그 자체가 ‘규칙’(rule)
- 하지만 이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

3단계 '방법론'의 도입 및 적용

200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Black Sea* 사건을 통해 도입

제1단계

- '잠정적인 경계선'(provisional delimitation line)을 설정
- 인접국들(adjacent States) 간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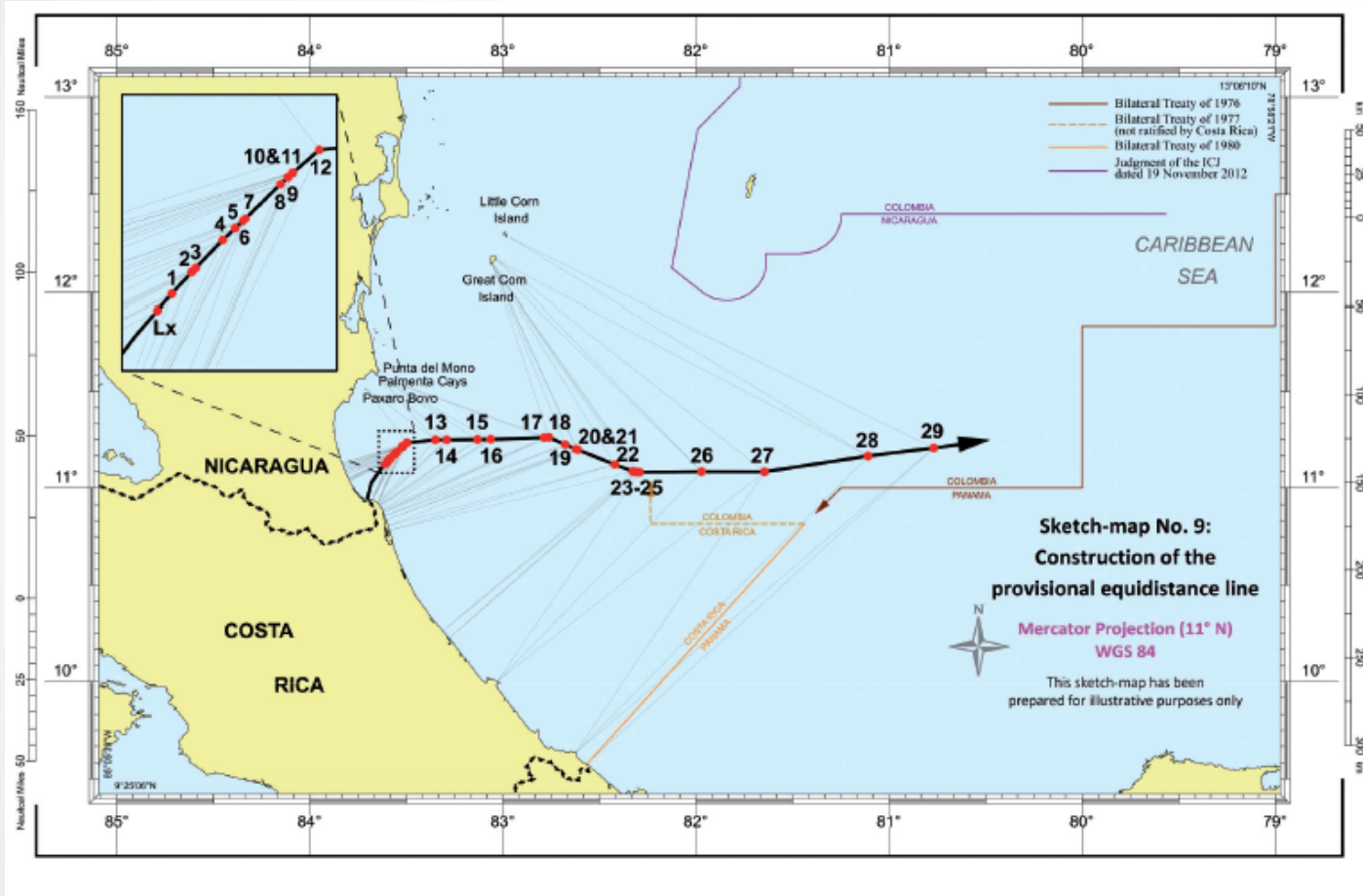
제2단계

- 잠정적인 경계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
- 섬의 존재,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 등이 대표적인 관련 사정들

제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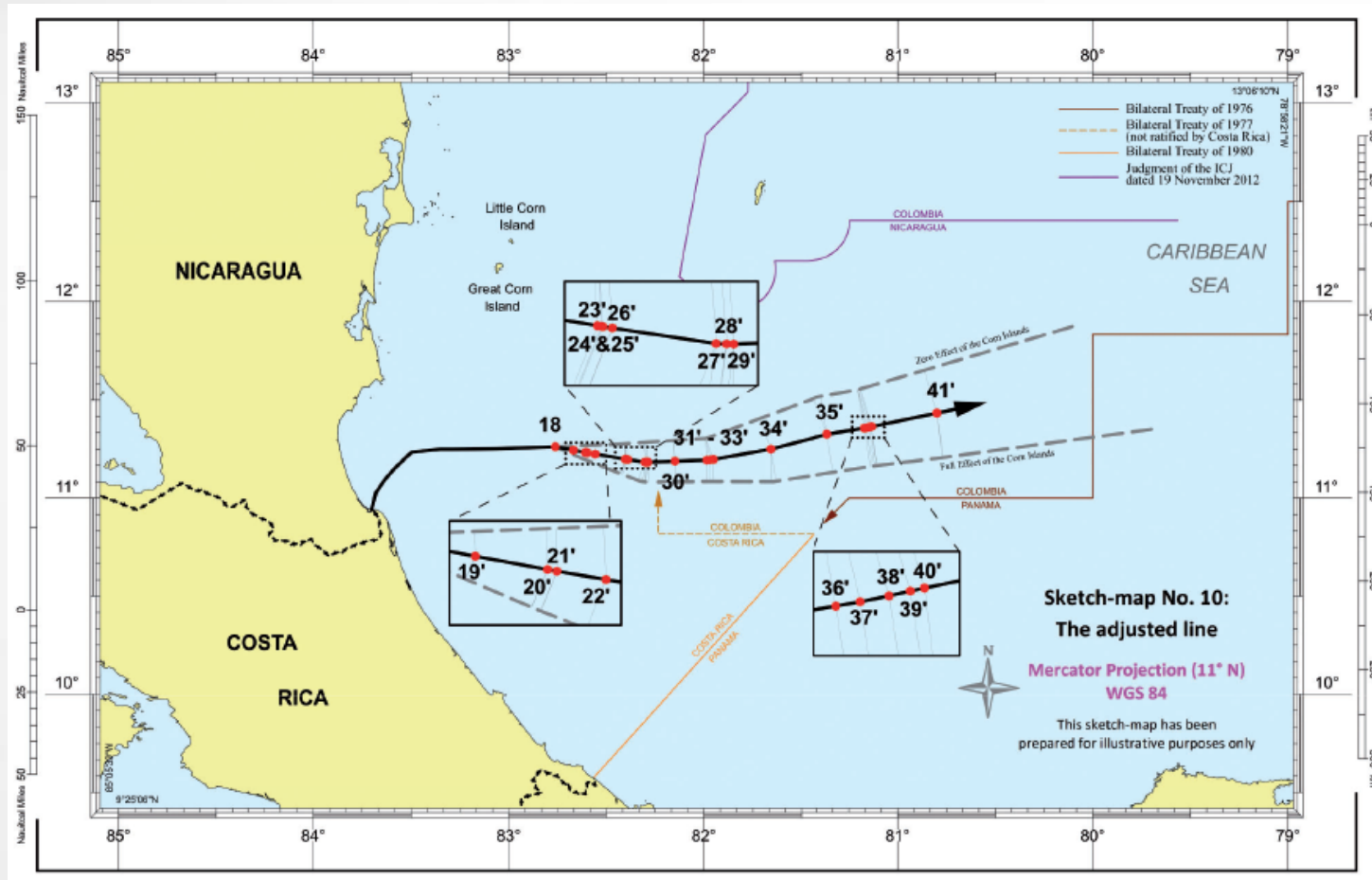
- '불균형성'(disproportionality) 점검
- 관련 해안의 길이 간 '비율'과 관련 영역의 면적 간 '비율'을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

제1단계의 예시 (2018년 *Costa Rica v. Nicarag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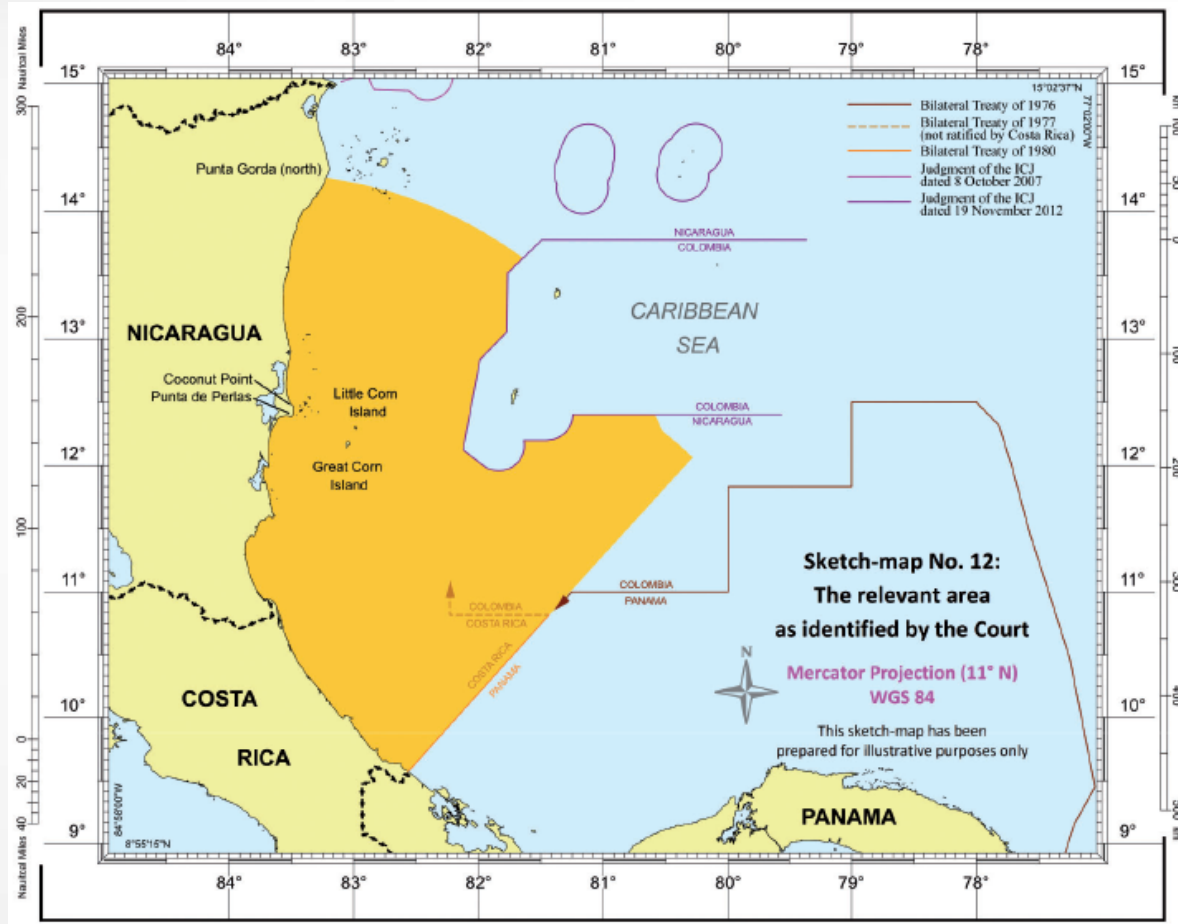
[Extract from *I.C.J. Reports 2018*, p. 194]

제2단계의 예시 (2018년 *Costa Rica v. Nicaragua*)



[Extract from *I.C.J. Reports 2018*, p. 199]

제3단계의 예시 (2018년 *Costa Rica v. Nicaragua*)



[Extract from *I.C.J. Reports 2018*, p. 202]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해양경계획정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 획정이 국제재판소 판례의 주된 경향이 됨

SMB의 개념

- EEZ(or EFZ)와 대륙붕이라는 두 개의 해양영역을 ‘하나의’ 선만을 이용하여 설정한 경계선
- 관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유용
- 1984년 *Gulf of Maine* 사건 이후 거의 모든 국제재판소 판례는 SMB를 설정

Neutral Circumstances

- EEZ(or EF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공통으로’ 관련이 있는 사정들, 즉 ‘Neutral Circumstances’를 도출하고자 함
- 따라서 ‘지리적’ 요소에 무게중심이 실림

국제재판소의 재량의 제한?

- ‘Neutral Circumstances’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의 재량은 제한되지 않음
- ‘Neutral Circumstances’ 중의 하나가 아닌 ‘경제적 요소’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태도



한국

- 등거리 '방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최신 국제재판소 '판례' 경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중국

- 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이해 부족 / 즉, '관련 사정들'과 착각하고 있음
- '형평', '형평한 원칙들', '형평한 해결' 개념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음
- 국제재판소 판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음

한중 간 관련 사정들의 존재?

한중 간 해양경계선으로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관련 사정들이 존재하는가?

어업문제?

- 단일해양경계 획정 시 어업문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남획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간 어획량 비교 등은 고려될 이유가 없음

관련 해안의 길이 간 격차?

- 한국의 '모든' 서해안은 물론 남해안 대부분도 관련 해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관련 해안의 길이가 중국 관련 해안의 길이보다 현저히 짧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지질학적 요소?

- 국제사법재판소는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present) 상태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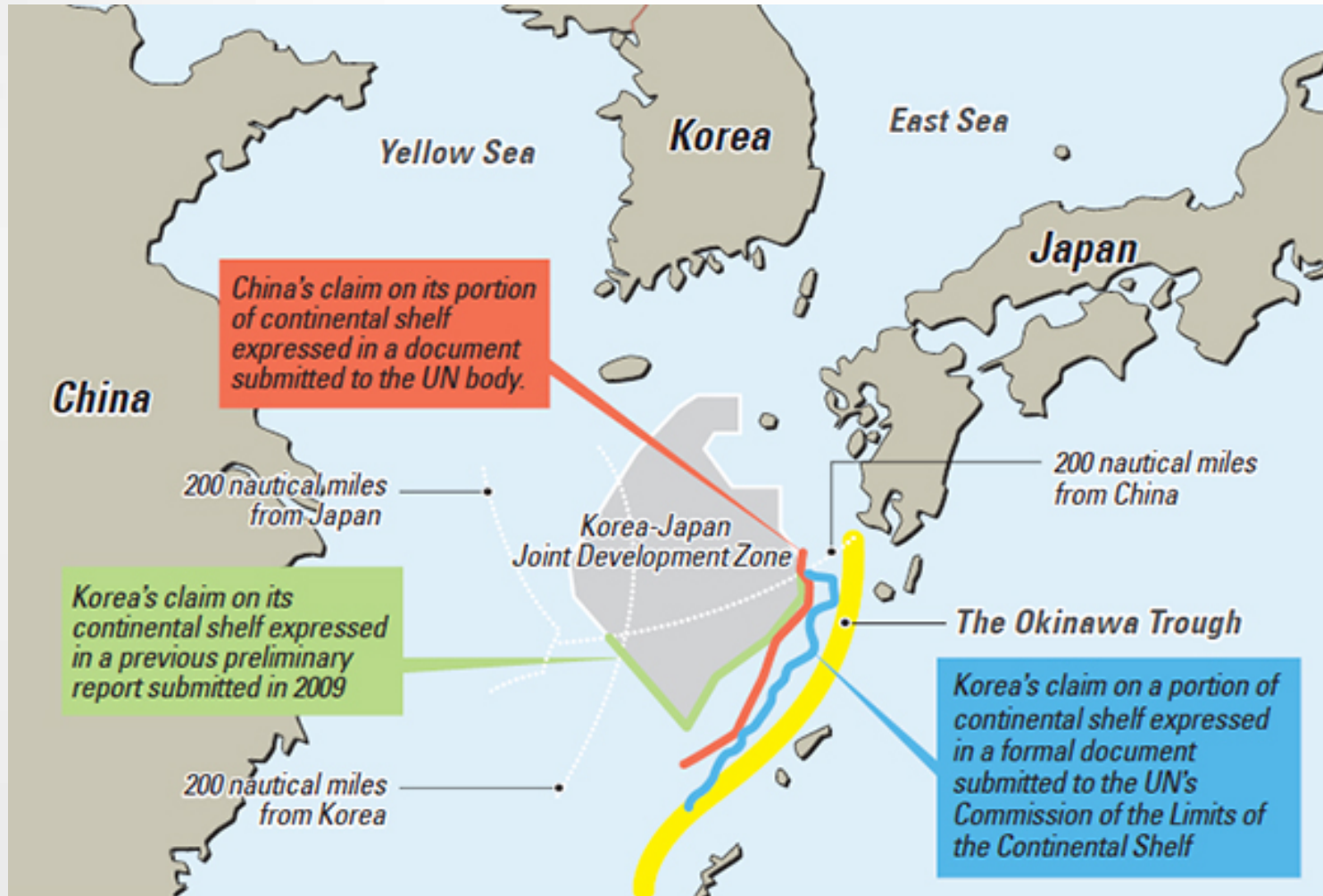
이어도 관련 한국과 중국의 주장(?)

[Extract from 동아일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관련 중국의 주장

[Extract from Korea Joongang Daily]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포커스: 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의 분할

- 결론적으로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핵심은 '잠정조치수역'의 처리
- 잠정조치수역의 '등면적 분할'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임

기존 어업협정의 처리

- 기존 어업협정의 종료를 전제로 어업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여 한중 간 어업문제를 규율하는 첫 번째 방법
- 기존 어업협정을 종료시키지 않고 어업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어업문제를 규율하는 두 번째 방법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미확정 수역을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칙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Article 74(3)
[83(3)] of the
UNCLOS

“..., the States concerned, ...,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 ,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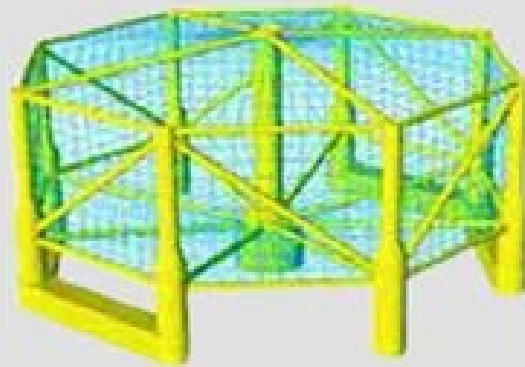
이 조항들의
함의

- 경계미확정 수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무의 존재
- 특히 소위 ‘자제의무’라 불리고 있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관련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 있음

잠정조치수역 관련 사례 (I): 심해양식장

[Extract from 조선일보]

선란-1호 제원



둘레·높이	180·35m
부피	50만㎡ (수영장 40개 규모)
양식 연어 수	30만~ 40만 마리
운용 수심	4~50m
운용 지점	육상에서 240km 떨어진 해상



잠정조치수역 관련 사례 (II): 원유시추설비

[Extract from SBS]



잠정조치수역의 법적 지위

- 한중어업협정 제7조는 한국과 중국 간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한중어업협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즉, 공해와 마찬가지로 ‘기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수역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이 ‘중첩’하고 있는 수역, 즉 ‘경계미확정 수역’이므로 일방의 관할권(주권적 권리 포함) 행사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관련 쟁점

-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자제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인가?
 -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재판관 중 한 명인 백진현 재판관은 가나의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개별의견’을 제시
 - 백진현 재판관은 해양환경에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수행되는 다소간의 ‘invasive activities’ 조차 관련 연안국들 간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음
 - ※ 즉, 어떤 국가의 행위가 자제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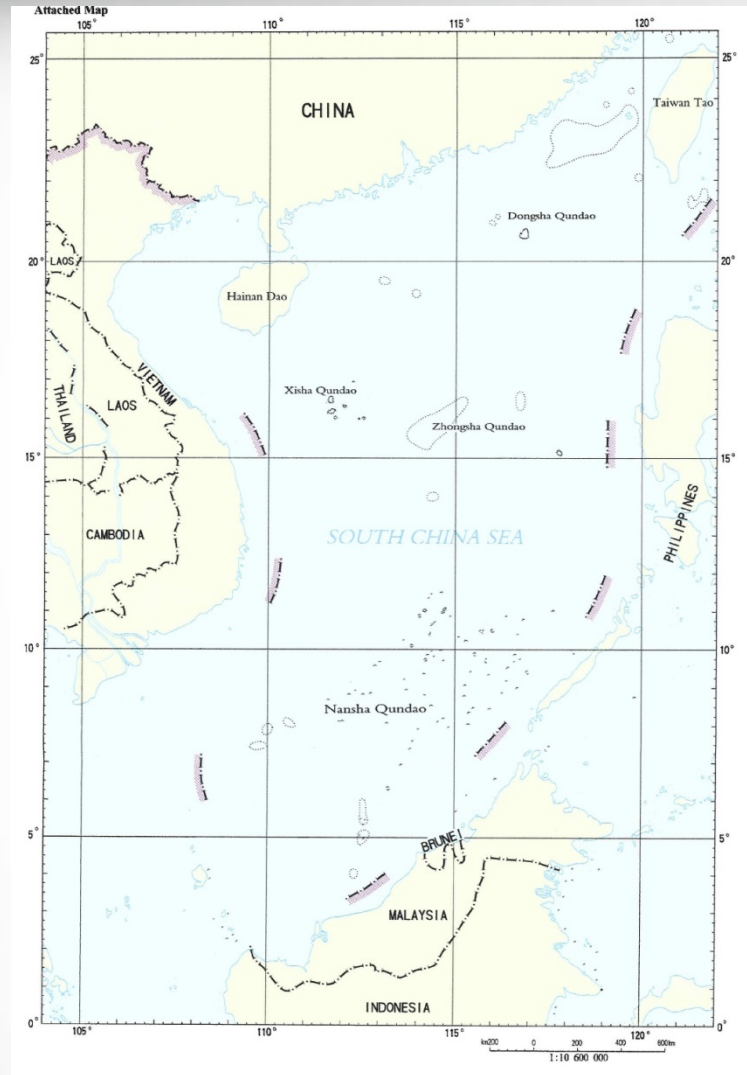
잠정조치수역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 백진현 재판관의 견해를 적용하면 중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위, 즉 ‘invasive activities’를 취한 것은 자제의무 위반 위반이 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
- 다만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중국의 자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국이 외교적으로 항의한 기록(또는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음

A world map composed of a grid of small dots, centered on the Pacific Ocean. The map is light gray and occupies the background. Overlaid on the map are several curved lines in shades of blue and green. At the bottom of the image, there is a large, curved white shape that transitions into a solid blue area.

2016년 남중국해 중재결정 관련

Nine-Dash Line: 남중국해 분쟁의 근원



[Extract from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hn_2009re_mys_vnm_e.pdf]

Nine-Dash Line의 탄생

1948년 ‘중화민국’ ‘정부’에 의한 “The Location Map of the South China Sea Islands” 출판

11개의
dash line 표시

- 11개의 dash line을 표시한 이유는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Spratly Islands, Paracel Islands, Pratas Islands, Macclesfield Bank 등이 중국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

두 개의
dash line 삭제

- 1953년 저우언라이의 뜻에 따라 당시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베트남의 입장을 고려하여 Gulf of Tonkin에 존재하던 두 개의 dash line을 삭제하여 오늘날의 Nine-Dash Line 완성

남중국해의 지리적 특징

세부적인 분쟁지역

Spratly Islands

- 약 140여개의 섬, 암석, 간조노출지 등으로 구성
-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이 몇 개씩 점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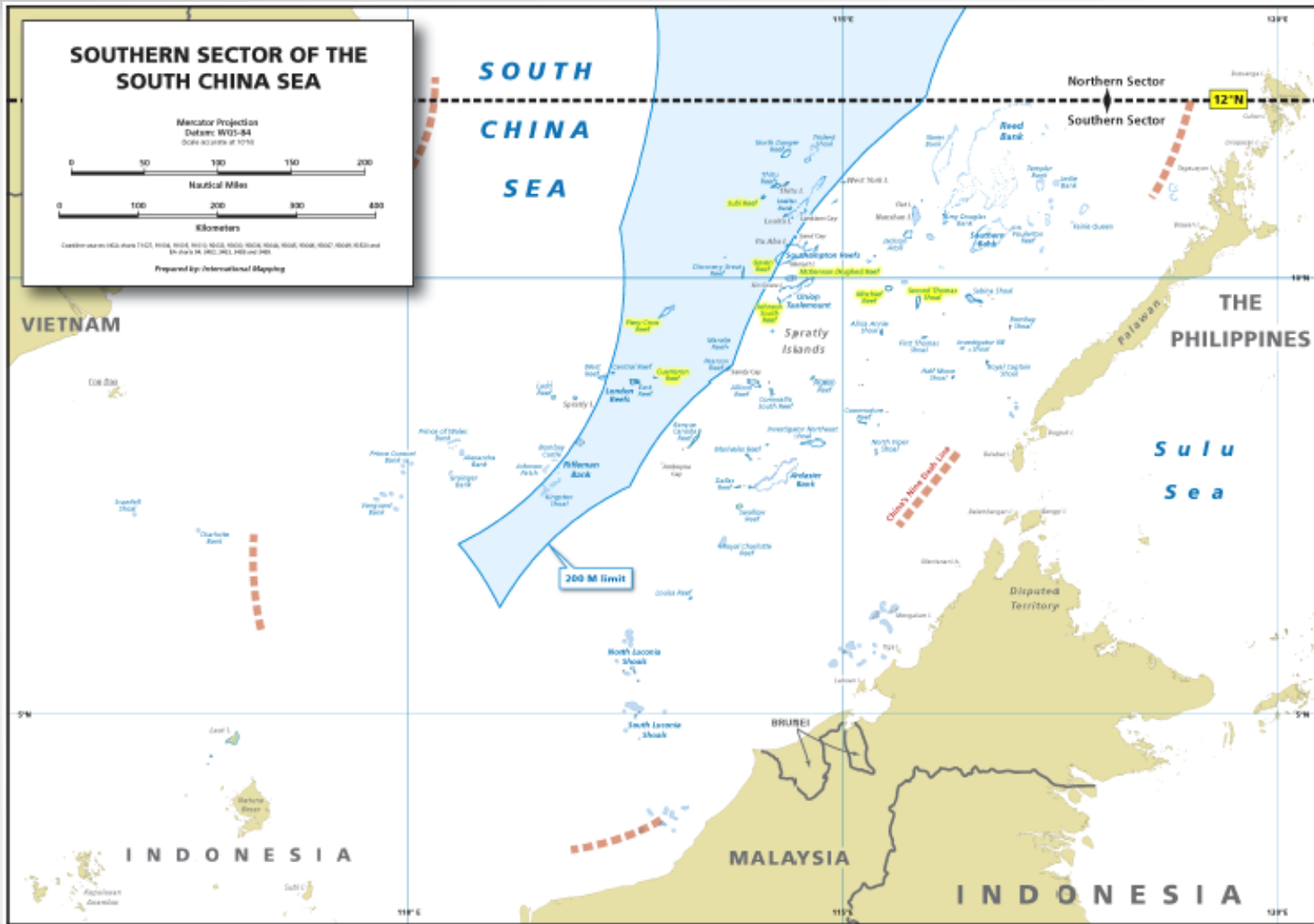
Paracel Islands

- 중국은 Woody Island에 Sansha City 건설
- 이 지역은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으로부터 무력사용을 통해 확보한 지역

Scarborough Shoal

- 필리핀은 '국내법'을 통해 '주권' 확인
- 2012년 4월 이후 중국은 필리핀의 어업 제한

남중국해 남부 지역



[Extract from <http://www.pcacases.com/web/sendAttach/1506>]

Philippines v. China 사건 일반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구성 (Registry: PCA)

5인의 중재재판관

- Judge Thomas A. Mensah (President)
- Judge Jean-Pierre Cot
- Judge Stanislaw Pawlak
- Professor Alfred H.A. Soons
- Judge Rüdiger Wolfrum

필리핀의 Counsel and Advocates

- Mr. Paul S. Reichler (Foley Hoag LLP, Washington, DC)
- Mr. Lawrence H. Martin (Foley Hoag LLP, Washington, DC)
- Professor Bernard H. Oxman (The University of Miami)
- Professor Philippe Sands QC (UCL)
- Professor Alan Boyle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중국의 '불출정' (non-appearance)

-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9조에 의하면 분쟁당사국 일방의 불출정은 소송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

Philippines v. China 사건 전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일방적인 '서면통고'

2013년

- 2013년 4월 24일,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들에 따라 중재재판소 구성 완료
- 2013년 6월 21일, 당시 ITLOS의 소장이었던 일본의 Shunji Yanai는 (사임한) 스리랑카의 Chris Pinto를 대체할 중재재판관이자 소장으로 가나의 Thomas A. Mensah를 임명

2014년

- 2014년 3월 30일,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자신의 'Memorial' 제출
- 2014년 12월 7일, 중국은 자신의 'Position Paper' 공표

2015년

- 2015년 4월 21일,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Position Paper'를 관할권에 관한 중국의 '항변'으로 간주하기로 결정
-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Jurisdiction) 및 소의 허용성에 대한 중재결정(award)이 주어짐

※ 2016년 7월 12일 본안(Merits)에 대한 최종적인 중재결정이 내려짐

China's Installations



[Extract from <http://thediplomat.com/2015/04/south-china-sea-chinas-unprecedented-spratlys-building-program/>]

분쟁의 본질에 대한 중국의 주장

2014년 Position Paper에 나타나 있음

1. 중국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가 아닌) 남중국해의 몇몇 해양지형들에 대한 '주권' 문제이고,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 중국은 설령 이 사건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제298조에 따른 중국의 (배제)선언에 의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범위 밖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필리핀은 서면통고 시부터 이 사건은 주권 결정 및 해양경계획정과 무관함을 강조

분쟁의 본질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단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대한 중재결정 시 판단

1. 분쟁의 본질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중재재판소는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함과 동시에
주권 분쟁이 있다 해도 분쟁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함

2. 중재재판소는 2015년 *Chagos MPA* 사건과 ‘달리’ 필리핀이
주권 분쟁 이외의 다른 측면의 분쟁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

3. 중재재판소는 ‘해양권원’에 관한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구분된다고 함

필리핀의 청구취지 Nos.1 and 2

청구취지 No.1

- 필리핀의 해양권원(maritime entitlements)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권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청구취지 No.2

- 소위 '구단선'에 의해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해양영역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 관할권과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그러한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중국의 해양권원의 지리적, 실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고 법적 효과가 없다.

필리핀의 청구취지 Nos.3 and 7

청구취지 No.3

- Scarborough Shoal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청구취지 No.2

-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A world map composed of small grey dots is centered in the background. Overlaid on the map are several curved lines in light blue and light green. The bottom of the slide features a blue gradient with a white curved border.

중국 국내 입법을 통해 바라본 중국의 서해 또는 남중국해 전략

1992년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미국 등 전통적으로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는 군함의 무해통항권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데 반해, 중국은 상당한 해군력을 건설했음에도 여전히 군함의 무해통항권 문제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독특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음

2021년 중국 해경법 (I)

해경법 제3조

- “해경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 및 상공에서 해상권익수호법집행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 중국은 오늘 현재도 여전히 ‘관할해역’이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국제법적 차원에서 분쟁 또는 충돌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 ※ 2016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관할해역이 내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그리고 기타 ‘관할해역’을 의미한다는 사법 해석을 제시했음

2021년 중국 해경법 (II)

해경법 제21조

- 해경법 제21조는 외국 군함(외국군용 선박)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중국 법령을 위반하면 중국 해경은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즉각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잠정조치수역'에서도?

해경법 제25조

- 해경법 제25조는 해경기구가 중국 관할해역에서 해상 임시 경계구역을 획정하여 선박·인원의 통행·체류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사유로 “기타 임시 경계구역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임

2021년 중국 해경법 (IV)

해경법 제49조

- 해경법 제49조는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고한 후에 더욱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경고나 경고 사격 없이 바로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용의 우려가 상당하고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1년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는 중국 영해를 통과하는 특정 종류의 외국 선박에게 진입 전 사전 통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잠수함, 핵추진선박, 방사성 물질 또는 그 밖의 유독·유해물질을 실은 선박, 법률·행정법규 또는 중국 국무원이 규정한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선박이 이에 해당함
 - 구단선 내 간조노출지 인근 수역에 이 조문이 적용되면 항행의 자유 작전과 충돌될 가능성이 상당함



THANK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